

#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

2017. 10. 30.

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

## 1. 제안경위

가. 제안자: 성동구청장

나. 제출일자: 2017. 10. 19.

다. 회부일자: 2017. 10. 20.(의안번호: 1152)

## 2. 제안이유

성동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, 신분보장 등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, 적용대상 등(안 제1조~제4조)

나. 종합계획의 수립, 위원회 설치, 지원사업 등(안 제5조~제8조)

다. 실태조사, 포상 등(안 제9조~제11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
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
#### 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 2017. 9. 1. ~ 2017. 9. 20.) 결과, 별첨 참조
- 2) 규제심사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# 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것으로 11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-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

안 제1조 ~ 제3조에서는

-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,

안 제5조 ~ 제6조에서는

- 구청장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하였음.

안 제7조에서는

- 성동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안 제8조 ~ 제9조에서는
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음.

- 관내 사회복지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및 제공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수준,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지역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.
  
- 이러한 점에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복지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및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.  
참고로, 서울시를 비롯하여 9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음.
  
- 다만, 집행부의 실천 의지가 부족할 경우 자칫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.